

#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은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95
----------	------

발의연월일 : 2025. 8. 29.

발의의원 : 양은숙 의원,

서도원 의원, 박주용 의원

## 1. 제안이유

어르신우대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변동된 지원대상을 정비하고 사업의 신청 주체를 변경함

## 2.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 매뉴얼에 따른 표현 정비

나. 지원대상 삭제 (안 제7조)

다. 사업의 신청, 선정, 취소의 주체 변경(안 제15조)

## 3. 개정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23조(노인 사회참여의 지원), 제26조(경로우대), 제47조(비용의 보조) 규정에 의하여,” 를 “「노인복지법」에 따라” 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라 함은” 을 각각 “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로우대 실천의지가 있는 달성군 소재 업소로 군수” 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 로 한다.

제6조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한 보조금” 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업소로 한다.

제7조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우대 업소” 를 “업소” 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신청을” 을 “선정 신청을” 로,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으로, “읍·면장”을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읍·면장은 사업신청서”를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대업소의 영업자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군수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읍·면장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읍·면장은”을 “군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협약”을 “협약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사업내용)”을 “(어르신일자리사업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르신일자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을 “어르신일자리사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의”를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신규일감”을 “신규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지원”을 “사업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 사업”을 “그 밖의 사업지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을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하고,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사업신청)”을 “(어르신일자리사업신청)”으로 하

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업에” 를 “어르신일자리사업에” 로, “구성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을 “구성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신청서” 를 “제16조에 따른 사업신청서” 로, “작업단” 을 “경우”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운영시” 를 “운영한 경우”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군노인” 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 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를 “관계법령을 따른다” 로 한다.

①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어르신우대업소 운영 협약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_\_\_\_\_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읍(면) \_\_\_\_\_리 \_\_\_\_\_번지 소재 \_\_\_\_\_업소 영업자 \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65세이상 전 노인이 “을”의 업소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이용대상) 관내 65세이상 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이용요금) 관내 65세이상 어르신이 “을”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요금은 기존 요금의 50% 할인한다.

제3조(지정기간) 지정기간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 까지로 한다.

제4조(해지) “을”이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1개월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 본 협약에 의한 지원금은 월 \_\_\_\_\_원 지급한다.

제6조(지원시기) 본 협약에 의한 지원기준일은 분기 마지막일로부터 10일 이전에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제7조(협약취소) “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본 협약을 위반한 때
2. 제2조의 할인요금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그 밖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8조(체결) 본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제9조(효력) 본 협약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 부터 유효한다.

년      월      일

갑 : \_\_\_\_\_ (인)

을 : \_\_\_\_\_ (인)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23조(노인사회참여의 지원), 제26조(경로우대), 제47조(비용의 보조) 규정에 의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및 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등 어르신 우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어르신”이라 함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p> <p>2. (생략)</p> <p>3. “어르신우대업소”(이하 “우대업소”라 한다)라 함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로우대 실천의지가 있는 달성군 소재 업소로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업소를 말한다.</p> <p>4. “작업단”이라 함은 근로능력</p>	<p>제1조(목적) ----- 「노인복지법」에 따라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제2조(용어의 정의) -----</p> <p>----- 뜻은 -----.</p> <p>1. -----란 -----</p> <p>-----</p> <p>-----</p> <p>2. (현행과 같음)</p> <p>3. -----</p> <p>-----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p> <p>4. -----란 -----</p>

이 있는 5인 이상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작업단체를 말한다.

5. “공동작업장”이라 함은 자치단체, 법인 또는 민간인이 설치한 작업장과 경로당 등, “작업단”이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공간을 말한다.

제6조(우대업소지원) 군수는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우대업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우대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한다.

1. 아미용업소
2. 목욕업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우대 업소

제9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우대업소에 대하여 월별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10조(사업신청·선정) ① 우대업소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  
-----.

5. -----란 -----

-----  
-----  
-----.

제6조(우대업소지원) -----  
-----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한 보조금-----.

제7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업소로 한다.

1. -----  
<삭 제>
3. 그 밖에 -----  
--- 업소

<삭 제>

제10조(사업신청·선정) ① -----  
-- 선정 신청을 ----- 별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을 통해 적정수의 우대업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우대업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매년 읍·면장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선정기준) 읍·면장은 우대업소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제12조(선정취소) 읍·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업소에 대하여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생략)
- 2. 협약 미이행 업소
- 3. 기타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13조(사업내용) “어르신일자리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지 제1호서식에 따른 -----  
----- 군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  
-----  
-----.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대업소의 영업자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군수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선정기준) 군수는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선정취소) 군수는 -----  
-----  
-----.

- 1. (현행과 같음)
- 2. 협약사항 -----
- 3. 그 밖에 -----  
-----

제13조(어르신일자리사업내용) 어르신일자리사업이란 -----  
-----.

1. (생략)

2.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어르신일자리사업지원) 군수는 노인적합 직종의 개발 및 보급 시책을 강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수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생략)

2. 신규일감 확보 및 제공 지원

3. 각종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

4.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13조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 경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비용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월 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매년 군수가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신청) 사업에 참여하고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

제14조(어르신일자리사업지원) -----  
-----  
-----  
----- 사업  
-----  
-----.

1. (현행과 같음)

2. 신규사업 -----

3. --- 사업지원-----

4. 그 밖의 사업지원-----

제15조(지원내용) ① -----  
-- 어르신일자리사업-----  
-----  
----- 범위에서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② -----  
----- 범위에서 -----  
-----.

제16조(어르신일자리사업신청) 어르신

자 하는 자는 작업단을 구성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업신청서를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업단에 대하여는 참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작업단

2. 불법·부당하게 작업단을 운영 시

3. 기타 군수가 작업단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노인 당사자 단체(이하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탁자가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의 발생으로 위탁이 취소 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타 노인 당사자 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일자리사업에 ---- 구성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

-----.

**제18조(사업의 취소)** -----

-----

-----.

1. 제16조에 따른 사업신청서----  
경우

2. ----- 운영한 경우

3. 그 밖에 -----  
-----

**제19조(위탁운영)** ① -----

-----

----- 대

구광역시 달성군 노인-----

-----.

② -----

-----

-----

----- 그 밖의 ----

-----

-----.

③ 군수는 사업을 위탁한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21조(준용규정) 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준용규정) ①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  
----- 관계법령을 따른다.

<삭 제>

【별지 제1호서식】

### 어르신우대업소 신청서

업소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	( )				
<p>위와 같이 어르신우대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p> <p>년 월 일</p> <p>업소명 : 성명 : (서명 또는 인)</p> <p>읍(면)장 귀하</p>					
<p>※ 구비서류 : 영업허가증 및 신분증 사본 1부</p>					

【별지 제2호서식】

### 어르신우대업소 운영 협약서

달성군 읍(면)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읍(면) 리 번지 소재 업소(이하 "을"이라 한다)는 65세이상 전 노인이 "을"의 업소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 제1조(이용대상) 관내 65세이상 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요금) 관내 65세이상 어르신이 "을"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요금은 기준 요금의 50% 할인한다.
- 제3조(지정기간) 지정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 제4조(해지) "을"이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1개월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금) 본 협약에 의한 지원금은 월 원 지급한다.
- 제6조(지원시기) 본 협약에 의한 지원기준일은 분기 마지막일로부터 10일 이전에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 제7조(협약취소) "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본 협약을 위반한 때
  2. 제2조의 할인요금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 제8조(제결) 본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 제9조(효력) 본 협약은 년 월 일 부터 유효한다.

년 월 일  
갑 : (인)  
을 : (인)

【별지 제1호서식】

### 어르신우대업소 선정 신청서

업소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	( )				
<p>「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어르신우대업소 선정을 신청합니다.</p> <p>년 월 일</p> <p>업소명 : 성명 : (서명 또는 인)</p> <p>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p>					
<p>※ 구비서류 : 영업허가증 및 신분증 사본 1부</p>					

【별지 제2호서식】

### 어르신우대업소 운영 협약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읍(면) 리 번지 소재 업소 운영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65세이상 전 노인이 "을"의 업소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 제1조(이용대상) 관내 65세이상 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요금) 관내 65세이상 어르신이 "을"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요금은 기준 요금의 50% 할인한다.
- 제3조(지정기간) 지정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 제4조(해지) "을"이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1개월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금) 본 협약에 의한 지원금은 월 원 지급한다.
- 제6조(지원시기) 본 협약에 의한 지원기준일은 분기 마지막일로부터 10일 이전에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 제7조(협약취소) "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본 협약을 위반한 때
  2. 제2조의 할인요금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그 밖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 제8조(제결) 본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 제9조(효력) 본 협약은 년 월 일 부터 유효한다.

년 월 일  
갑 : (인)  
을 : (인)